

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(제38조제1항)

지원 유형	지급 기준	비고						
고용촉진장려금 (`21년 특례지원)	<p>1.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1개월 단위별로 `22.8.31.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1개월분을 지급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월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2. 고용기간 1개월 단위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7 891 1110 1005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57 891 662 965">구분</th> <th data-bbox="662 891 898 965">6개월간 최대 지원금액</th> <th data-bbox="898 891 1110 965">1개월 최대 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57 965 662 1005">우선지원대상기업</td> <td data-bbox="662 965 898 1005">600만원</td> <td data-bbox="898 965 1110 1005">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6개월간 최대 지원금액	1개월 최대 지급액	우선지원대상기업	600만원	100만원	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.10.1. 이후 2021.12.31.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
구분	6개월간 최대 지원금액	1개월 최대 지급액						
우선지원대상기업	600만원	100만원						